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4.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년 10월 16일, 정부

나. 회부일자: 2024년 10월 17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5. 2. 19.)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2025. 4. 16.)

상정, 제안설명, 축조심사, 의결(원안가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5. 4. 23.)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정부)

환경적·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지정취소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

하여,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일부터 1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다는 사유로 해당 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 실적이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개정안은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지정일로부터 1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더라도 ‘정당한 사유’ 유무를 확인하여 지정취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21조제4항제3호).

[표 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1조(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 ③ (생략)	제21조(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u>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일로부터</u>	3. <u>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인력 양성기</u>

현행	개정안
1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는 경우	<u>관 지정일부터</u>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현행법은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연구소나 대학 등을 지정하여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①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②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③지정일로부터 1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¹⁾

1) 제21조(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생략)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연구소나 대학,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일로부터 1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는 경우

개정안은 위의 지정취소 사유 중 합법적으로 지정받아 지정요건에 부합하더라도 ③지정일로부터 1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는 경우 ‘정당한 사유’를 참작하여 지정취소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환경적·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지정취소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개정안과 유사하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훈련을 하지 아니한 경우²⁾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교육기관이 없어 법 개정으로 인한 즉각적인 실익은 없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개정안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법제처의 ‘영업취소사유 합리화를 위한 법령정비’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정당한 사유’와 관련한 정비대상 법률 25개 중 하나임.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력양성 교육훈련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원이)

동 개정안은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그 지정일부터 1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어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음.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개정안에 대하여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붙임]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 호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제3호 중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일로부터”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일로부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 력의 양성 등) ① ~ ③ (생 략)	제21조(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 력의 양성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 항에 따라 지정한 전문인력 양 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 ----- ----- ----- -----.
1. 2. (생 략)	1. 2. (현행과 같음)
3. <u>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일로 부터 1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 는 경우</u>	3. <u>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일부터 ----- -----</u>